

제2845호
2021. 7. 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5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1-88호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53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성실납세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
명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목폐지에 따른 성실납부자 기준 조항 개정(안 제4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세목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를 “자동차세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자동차세로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88호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증감률	
계	563,753,002	556,466,771	7,286,231	1.31%	
일 반 회 계	512,864,153	507,148,944	5,715,209	1.13%	
특 별 회 계	50,888,849	49,317,827	1,571,022	3.19%	
의 료 급 여 기 금	336,052	247,476	88,576	35.79%	
기 반 시 설	1,392,332	1,392,332	0	0.00%	
주 차 장	49,160,465	47,678,019	1,482,446	3.11%	